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李鍾容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신임지부장에게 듣는다 ……3면
—이승엽 전북지부장
◉ 생약이용 신약개발 현황 심포지엄 ……3면
◉ 현장탐방(연천) ……4면
◉ 삼도시호 재배관리 요령 ……5면

규격화 개정 촉구

수입 한약재 우선 규격화되야

국내산 생약재는 시기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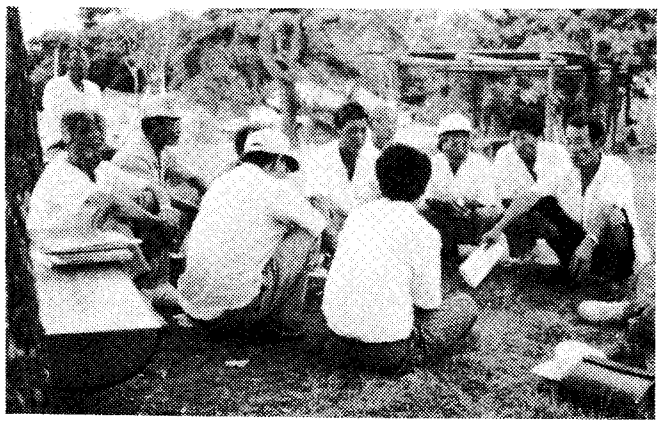

◇보사부 유권해석 등 업무지침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장흥군 작목회 농민들.

이상과 같이 보사부의 규격품 대상 한약지정고시와 관련한 유권해석 등 업무지침을 보고 생산자(농민), 생산자 단체등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정책의 시행착오로 발생되는 문제는 언제나 농촌을 지키고 권력없고 힘없는 농민이 목이 되어 다시피하여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실이고 보면 이번에 보사부에서 시행한다는 국산한약재 규격화는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여 농민의 의견수렴이 반영되는 정책이 나와야한다.

UR 타결의 여파로 중국산 한약재가 무분별하게 무제한 수입되어 국내산 한약재 가격의 하락으로 약초농사를 포기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95년 4월부터 규격화가 되었을 때 농민이 생산한 약초를 원료의약품제조 업체에게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농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더욱이나 칼칼할 따름이다.

따라서 중국산 한약재에서 밀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저질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켜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받게 하여 언론매체에 사건화가 되어왔음으로 우선 수입 한약재부터 규격화를 하여 양질의 한약재를 유통하는 방안과 수급조절용 수입약재를 일괄 수입하여 판매 이익금은 전액 생산자 피해보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의 보사부 유권해석등 업무지침을 보고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농민이 생산한 생약 등을 한약도매상, 한의원, 한약방 등에 대하여 규격품화된 한약만을 판매하거나 조제 사용토록 의무화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민이 생산, 가공한 농산물을 한약으로 날품하였을시 상기 업소에서 진열 판매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둘째, 농가에서 이미 규격화된 상품을 제조업소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여 규격화 한다는 것인가? 결국 불필요한 가공 및 유통단계만 한 단계 더 만들어 특정 업체를 비호하는 처사라고 대다수의 생산농가 및 업체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농수산부 조제시설은 인가 공장이고 보사부의 제조시설은 허가제도인데 시설규모는 대동소이하나 보사부허가와 차이점은 약사를 고용한다는 것과 조그마한 실험실을 비치하고 있으나 실험실 진열기구는 확인해본 결과 특별한 기구가 없으며 사용하는 업체도 없을 뿐더러 그 기구가지고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농민의 단순가공작업 인정에 대하여 수긍을 하며 고시효과 내용중 농민등의 한약재 단순가공 행위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한약판매업소 등은 규격한약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애매모호한 시항이다.

보사부는 고시한 내용을 개정하여서라도 농민이 직접 생산하여 가공한 생약재를 비규격품으로 운운할 것이 아니라 품질 우수하고 국제경쟁력에 이길수 있는 국산 한약재도 한약판매업소등에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회의 입장은 규격화 품목중 국내산은 무조건 제외할 것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포장하는 것은 규격품으로 인정하고 현 보사부에서 구상중인 생산자 증명은 생산자 표시로 대체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면서 만일의 경우 국내산 품목 규격화 강행시는 생산 의욕저하는 물론 전국 생약생산 농민의 민원등 소요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첨가하여 한약재의 일시적인 가격의 폭락과 폭등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생산자 단체에게 계획 생산을 유도하고 약초 수매자금을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이 약초농사를 희망을 가지고 마음놓고 생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힘쓰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田根澤〉

「규격품대상 한약지정고시와 관련한 유권해석 등 업무지침」

가. 동 고시(보건사회부고시 제1994-14호 : 1994. 3. 31)의 배경등

○근거 :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목적 : 한약 유통구조의 개선과 품질의 향상(밀수, 위조, 변조, 불량, 저질한약 등의 근절)

○내용 : 갈근등 사용빈도가 높은 37종의 한약을 규격품대상 한약으로 지정

— 1년의 권장기간을 거쳐 '95. 4. 1부터 전면 시행

— 약사법에 의한 한약판매업소(도매상, 한약방, 약국)등은 규격품 한약만을 판매(사용, 저장, 진열)하여야 함

—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제조업소에서 적법하게 제조된 한약은 규격품으로 인정함.

* 제조방법, 외관 등 품질기준, 포장방법 등 규격품의 세부요건은 추후 별도 고시할 방침임.

나. 관련 유권해석 등

○생산자(농민)의 단순가공작업 인정 범위

— 한약재는 흔히 식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농민등이 직접 재배 또는 채취한 한약재의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척·건조·절단등 단순 가공행위는 농산물 생산 과정의 일부로 보아 의약품제조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함(약사법 제26조 적용대상이 아님)

○농산물로서 취급(판매)하는 경우 유의사항

— 위와같이 단순가공하여 농산물로서 공판장이나 거래시장 등지에서 판매하거나 한약재로서 한의원, 한약방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효능·효과등의 표시, 기타 선전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약사법 제55조)

○고시의 효과

— 이 고시는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판매업자인 한약도매상, 한약방, 약국 등에 대하여 규격품 한약만을 판매하거나 조제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며, 농민등의 한약재 단순 가공행위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1백만원성금기탁

이종용회장 KBS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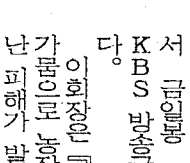

본회 이종용 회장은 지난 7월23일 가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금일봉 1백만원을 KBS 방송국에 전달했다.

이회장은 『수십년만의 가뭄으로 농작물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뭄피해 갈수록 심각

약용작물 수급 차질우려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약용작물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호남 지방에 가뭄비상으로 인하여 식수난까지 겹쳐 가뭄대책에 온 행정력을 쏟고 있는 현실이며 타 작물에 비해 약용작물의 피해상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일반 평야지대 보다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사지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심하다.

지역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94년 전체 약초 재배면적 1만5천1백16ha 중 전남 25%, 경남 28%, 경북 18%의 정도이며, 그중 피해가 많은 품목은 원뿌리(1년생 묘목), 황기, 당기, 시호 등으로 25%, 30%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남지역은 삼도시호 전국재배면적의 13.4%를 차지하는 곳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남지역은 1만3천35농가가 삼도시호를 재배, 재배면적 1천2백96ha에서 2천4백71%를 생산해 냈으며 경남지역은 3천3백87농가가 60ha에서 1천6백63%의 삼도시호를 생산했다.

〈趙萬湜〉

인사

「任」

▲충북 증원군 사무소장 심철수(94년 7월 2일부)

▲경기도 안성군 사무소장겸 공판장장 이웅황(94년 7월 2일부)

▲경기도 의정부시 공판장장 윤창권(94년 7월 2일부)

「免」

▲부산시 공판장장 김수동(94년 7월 6일부)

*강서구 사무소장은 유효

▲전남 목포시 공판장장 김동수(94년 7월 6일부)

*목포시 사무소장은 유효

▲충북 청원군 남성면 출장소장 류관현(94년 7월 6일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출장소장 박용희(94년 7월 6일부)

〈바로잡습니다〉

지난호 1면 광고난에 경기도 가평군 「이인태」를 「이인기」로, 2면 인사난에서 「전라북도」 김종근을 「전라남도」로 잘못 표기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